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

의안 번호	12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4. 30.  
제 출 자 : 박정자 의원의외 6인

## 1. 주 문

- (1) 감사위원 :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
- (2) 선임방법
  - 가.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
  - 나. 선임된 감사위원 대표자는 의원중 연장자로 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.

## 3. 관련법규

- 가. 지방자치법 제125조
- 나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

### 民願調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
=====

의안 번호	13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. 7. 14.  
발 의 의 원 : 배기한 의원의외 10인

## 1. 주 문

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는 민원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사하여 영등포구청의 신뢰회복과 구민의 민원 및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.

## 2. 주요골자

영포건설 집단민원사항, 복지시설 하자 및 보수민원사항, 재무행정의 입찰관련 민원사항,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사항.

### 民願調査計劃書

=====

## 1. 조사의 목적

의원의 의정활동중 풀리지 않고 구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중 특히 재무행정분야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민원사항과 영포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,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사항, 복지시설 하자 및 보수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제도나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가는 부분을 해소하여 주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.